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6일, 최보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8.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의(2025. 9. 22.)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의(2025. 11. 1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5. 11.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보운의원)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및 모금을 통한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인용한 다른 법률의 조문이 개정되거나, 규제 개혁 필요성 등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63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550)이 대안으로 묶여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 법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이미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모금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근거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효율적인 모금을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집중 모금을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사전·사후보고 등 부차적인 절차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는 것이 모금회로 하여금 더 효율적인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음.

현행법은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하여 비지정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배분금액은 100분의 1 미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배분한도를 삭제하더라도 비지정 기부금품의 배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법 제24조에서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그 밖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 알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표시의무를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더라도 공동모금재원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한편, 배분자의 표시의무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재량을 부여한다면, 법 제35조제3항제4호의 벌칙 규정을 같이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 중 이미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배분자의 표시 의무에 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개정안의 내용 중 이미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안 제11조제1호 및 제20조의4), 개정안은 배분자의 표시 의무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제35조제3항제4호).

수정주요내용

가. 현행 규정을 고려하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개정 내용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호).

나. 현행 규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에 관한 개정 내용을 삭제함 (안 제20조의4).

다. 배분자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함 (제35조제3항제4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1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안 제20조의4를 삭제한다.

제35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 ----- ----- -----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 ----- ----- -----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신 설></u>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의 ----- ----- -- <u>제20조의4(압류금지)</u> <u>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자에 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u>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삭 제></u>
제35조(벌칙) ① ~ ② (생략)	제35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벌칙)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③ ----- -----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현행과 같음)</u>	③ ----- -----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u><삭 제></u>
---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를 “기부금품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을 “개발도상국가를”로 한다.

제20조의3 중 “표시하여야 한다”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 ③ (생략) ④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할 수 있다. ⑤ 모금회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다.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 ----- --기부금품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 1. <u>개발도상국가를</u> ----- ----- -----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략)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u>표시하여야 한다.</u> 제21조(배분신청) ① (생략) ② <u>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 ③ (생략) 제35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u>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u>	--- 2.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 ----- ----- --<u>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u> 제21조(배분신청)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벌칙)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1. ~ 3. (개정안과 같음) <u><삭 제></u>
---	---

<u>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u> <u>배분한 자</u>	
---------------------------------------	--